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662호
2. 발 의 자 : 김길영 의원
3. 발의일자 : 2023. 3. 29.
4. 회부일자 : 2023. 4. 3.

II. 제안이유

-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2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3. 입법예고(2023. 4. 6. ~ 4. 10.) 결과: 의견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폐지조례안은 2023년 3월 29일 김길영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662호로 발의되어 2023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폐지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텃밭 사업이 상위법령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“도시농업”은 “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과정과 생산물을 활용하는 농업활동”으로,¹⁾ 지난 2011년 11월 22일 제정된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.

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우리 사회에 도시농업을 확산시키고, 학교에서의 텃밭 조성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
-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텃밭의 효과를 인식하여 학교텃밭 조성을 교육감 공약실천계획(2018~2022)의 주요 과제로²⁾ 관리하고, 학교 기본운영비에 학교텃밭 운영비와 신규조성비를 편성하는³⁾ 등의 노력을 전개하였으며

2021년 12월 기준 서울시 내 660개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옥상 녹화와 상자형 텃밭, 농지 등의 형태로 학교텃밭이 조성, 운영되고 있습

1)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

2) 3-5-3. 학교 내 텃밭 조성 및 식생활 교육 확대

3) '2020년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약이행평가 결과보고서'(서울특별시교육청, 2021.)

니다.⁴⁾

○ 그리고 지난 2022년 3월에는 학교텃밭 교육의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하여 학교텃밭을 이용한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되었습니다.

○ 동 조례는 학교텃밭을 활용한 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농업 및 자연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유도하고, 학생의 정서 및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⁵⁾

정작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따른 학교텃밭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⁶⁾

○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나⁷⁾ 이 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조차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,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한편 학교 현장에서의 텃밭조성과는 별개로 동 조례에 기반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텃밭 관련 정책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인바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
○ 또한 법적 측면에 있어서 법 제3조에서는 도시농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, 법 제8조에서는 “학교교육형 도시농업” 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법 시행규칙에서는

4) 서울시의회 요구자료(요구번호 2806) ‘학교텃밭 운영 개요 및 현황 등’(제출일 2021.12.30.)

5) 제1조 목적 규정

6) 서울시의회 요구자료(요구번호 960) ‘학교텃밭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사업계획서 및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(개선)된 사업추진사항’에 대해 ‘조례 제정 이후 추진 사항이 없음’으로 보고함(제출일 2023.4.19.).

7)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매년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“학교교육형 도시농업”을 “학교텃밭 및 기타 학교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

□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·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8조(도시농업의 유형 등)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5. 학교교육형 도시농업: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□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2조(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)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.

5. 학교교육형: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텃밭 및 기타 학교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

○ 아울러 법 제18조에서는 도시농업을 위한 학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□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8조(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) ③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·체험 활동이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 제2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○ 즉 학교텃밭 사업 추진의 근거는 법령에 이미 충분히 규정되어 있고, 단순한 행정지도나 예산조치만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⁸⁾,

8) 「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, 법제처, p.11

관련 조례가 마련되어있지 않아도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조례의 학생 정서 및 인성 등을 위한 취지 측면과 상위법에 없는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기능 측면에서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5353, 2023.4.7.).

○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조례 존치 필요성을 스스로 현저히 감소시켰는바,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해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이준석 2180-8263	입법조사관	김한수 2180-8269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